

#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0,114,000	13,803,420
일반회계	387,440,409	11,623,212
특별회계	72,673,591	2,180,208
공기업특별회계	22,850,587	685,51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850,587	685,518
기타특별회계	49,823,004	1,494,690
주택사업특별회계	12,100	363
의료보호특별회계	315,563	9,46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40,000	46,200
장학사업특별회계	9,496,264	284,8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8,945	36,268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35,831	25,075
수질개선특별회계	35,529,901	1,065,89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84,400	23,5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84,743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